

농산물 표준규격
사 과

[규격번호 : 101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사과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음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선택	별도로 정하는 품종별/등급별 착색비율 [표 2]에서 정하는 「특」이외의 것이 섞이지 않은 것 단, 쓰가루(비착색계)는 적용하지 않음	별도로 정하는 품종별/등급별 착색비율 [표 2]에서 정하는 「상」에 미달하는 것이 없는 것 단, 쓰가루(비착색계)는 적용하지 않음	별도로 정하는 품종별/등급별 착색비율 [표 2]에서 정하는 「보통」에 미달하는 것이 없는 것
③ 신선도	윤기가 나고 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⑤ 경결점과	없는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호칭 구분	3L	2L	L	M	S	2S
1개의 무게(g)	375이상	300이상~375미만	250이상~300미만	214이상~250미만	188이상~214미만	167이상~188미만

[표 2] 품종별/등급별 착색비율

품 종	등 급	특	상	보통
홍옥, 홍로, 화홍, 양광 및 이와 유사한 품종		70% 이상	50% 이상	30% 이상
후지, 조나골드, 세계일, 추광, 서광, 선홍, 새나라 및 이와 유사한 품종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쓰가루(착색계) 및 이와 유사한 품종		20% 이상	10% 이상	-

< 용어의 정의 >

① 착색비율은 날개별로 전체 면적에 대한 품종 고유의 색깔이 착색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 미숙과 : 당도, 경도, 착색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성숙 이전에 인공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 병충해과 : 탄저병, 검은별무늬병(흑성병), 겹무늬썩음병, 복숭아심식나방 등 병해충의 피해가 과육까지 미친 것

㉤ 생리장해과 : 고두병, 과피 반점이 과실표면에 있는 것

㉥ 내부갈변과 : 갈변증상이 과육까지 미친 것

㉦ 상해과 : 열상, 자상 또는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기타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경미한 녹, 일소, 약해, 생리장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경미한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꼭지가 빠진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배

[규격번호 : 102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배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음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선택	품종 고유의 선택이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선택이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신선도	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⑤ 경결점과	없는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호칭	3L	2L	L	M	S	2S
1개의 무게(g)	750이상	600이상~750미만	500이상~600미만	430이상~500미만	375이상~430미만	333이상~375미만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미숙과 : 당도, 경도 및 색택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성숙 이전에 인공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 ㉣ 과숙과 : 경도, 색택으로 보아 성숙이 지나치게 된 것
- ㉤ 병충해과 : 붉은별무늬병(적성병), 검은별무늬병(흑성병), 겹무늬병, 심식충류, 매미충류 등 병해충의 피해가 과육까지 미친 것
- ㉥ 상해과 : 열상, 자상 또는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경미한 과피흑점, 얼룩, 녹, 일소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 경미한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 꼭지가 빠진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복숭아

[규격번호 : 103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복숭아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크기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음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선택	품종 고유의 선택이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선택이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④ 경결점과	없는 것	5%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품 종		호 칭	2L	L	M	S
1개의 무게(g)	유명, 장호원황도, 천중백도, 서미골드 및 이와 유사한 품종		375이상	300이상~375미만	250이상~300미만	210이상~250미만
	백도, 천홍, 사자, 창방, 대구보, 진미. 미백 및 이와 유사한 품종		250이상	215이상~250미만	188이상~215미만	150이상~188미만
	포목조생, 선광, 수봉 및 이와 유사한 품종		210이상	180이상~210미만	150이상~180미만	120이상~150미만
	백미조생, 찌요마루, 선프레, 암킹 및 이와 유사한 품종		180이상	150이상~180미만	125이상~150미만	100이상~125미만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미숙과 : 당도, 경도 및 색택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

㉣ 과숙과 : 경도, 색택으로 보아 성숙이 지나치게 된 것

㉤ 병충해과 : 복숭아탄저병, 세균성구멍병(천공병), 검은점무늬병(흑점병), 복숭아명나방, 복숭아심식나방 등 병해충의 피해가 과육까지 미친 것

㉥ 상해과 : 열상, 자상 또는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외관상 씨 쪼개짐이 두드러진 것

㉧ 기타 : 중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외관상 씨 쪼개짐이 경미한 것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경미한 일소, 약해, 찰상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포도

[규격번호 : 104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포도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낱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음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3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음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선택	품종 고유의 선택을 갖추고, 과분의 부착이 양호한 것	품종고유의 선택을 갖추고, 과분의 부착이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낱알의 형태	낱알 간 속도와 크기의 고르기가 뛰어난 것	낱알 간 속도와 크기의 고르기가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⑤ 경결점과	없는 것	5%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호 칭		2L	L	M	S
품 종					
1송이의 무게(g)	샤인머스켓, 거봉, 흑보석, 자옥 등 무핵(씨없는 것)과와 유사한 품종	700이상	600이상~700미만	500이상~600미만	500미만
	마스캇베일리에이, 마스캇오브알렉산드리아, 이탈리아 등 이와 유사한 품종	600이상	500이상~600미만	400이상~500미만	400미만
	거봉, 흑보석, 자옥 등 유핵(씨있는 것)과와 유사한 품종	500이상	400이상~500미만	300이상~400미만	300미만
	캠벨얼리, 새단 등 이와 유사한 품종	450이상	350이상~450미만	300이상~350미만	300미만
	텔라웨어, 킹텔라 등 이와 유사한 품종	250이상	150이상~250미만	100이상~150미만	100미만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부패, 경화, 위축 등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 ㉢ 미숙과 : 당도, 색택 등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
- ㉣ 병충해과 : 탄저병, 노균병, 축과병 등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 피해과 : 일소, 열과, 오염된 것 등의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낱알의 밀착도가 지나치거나 성긴 것
- ㉢ 병해충의 피해가 경미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감 굴

[규격번호 : 105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감굴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 [표 2]에서 무게 또는 지름이 다른 것이 5%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크기(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음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 [표 2]에서 무게 또는 지름이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음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선택	별도로 정하는 품종별/등급별 착색비율 [표 3]에서 정하는 “특” 이외의 것이 섞이지 않은 것	별도로 정하는 품종별/등급별 착색비율 [표 3]에서 정하는 “상”에 미달하는 것이 없는 것	별도로 정하는 품종별/등급별 착색비율 [표 3]에서 정하는 “보통”에 미달하는 것이 없는 것
③ 과피	품종 고유의 과피로써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품종 고유의 과피로써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껍질 뜯는 것 (부피과)	별도로 정하는 껍질 뜯는 정도 [그림 1]에서 정하는 “없음(○)”에 해당하는 것	별도로 정하는 껍질 뜯는 정도 [그림 1]에서 정하는 “가벼움(1)” 이상에 해당하는 것	별도로 정하는 껍질 뜯는 정도 [그림 1]에서 정하는 “중간정도(2)” 이상에 해당하는 것
⑤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⑥ 경결점과	5% 이내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1(한라봉, 청견, 진지향 및 이와 유사한 품종)

품 종 \ 호 칭		2L	L	M	S	2S
1개의 무게(g)	한라봉, 천혜향 및 이와 유사한 품종	370이상	300이상~370미만	230이상~300미만	150이상~230미만	150미만
	청견, 황금향 및 이와 유사한 품종	330이상	270이상~330미만	210이상~270미만	150이상~210미만	150미만
	진지향 및 이와 유사한 품종	125이상~165미만	100이상~125미만	85이상~100미만	70이상~85미만	70미만

[표 2] 크기 구분-2(온주밀감 및 이와 유사한 품종)

구분 \ 호 칭	2S	S	M	L	2L
1개의 지름 (mm)	49~53	54~58	59~62	63~66	67~70
1개의 무게 (g)	53~62	63~82	83~106	107~123	124~135

※ 드럼식 선과기는 지름, 중량식 선과기는 무게를 적용하고, 호칭 숫자 뒤의 명칭은 유통현실에 따를 수 있음

[표 3] 품종별/등급별 착색 비율(%)

품 종 \ 등 급		특	상	보통
온주밀감	5~10월 출하	70이상	60이상	50이상
	11~4월 출하	85이상	80이상	70이상
한라봉, 천혜향, 청견, 황금향 진지향 및 이와 유사한 품종		95이상	90이상	90이상

[그림 1] 껍질 뜯 정도

없음(○)	가벼움(1)	중간정도(2)	심함(3)
			
껍질이 뜯지 않은 것	껍질 내표면적의 20%이하가 뜯 것	껍질 내표면적의 20~50%가 뜯 것	껍질 내표면적의 50%이상이 뜯 것

< 용어의 정의 >

① 착색비율은 날개별로 전체 면적에 대한 품종고유의 색깔이 착색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숙기(조생종, 중생종, 만생종)가 다른 것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 미숙과 : 당도, 색택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덜익은 과일을 수확하여 아세틸렌, 에틸렌 등의 가스로 후숙한 것을 포함한다)

㉣ 일소과 : 지름 또는 길이 10mm 이상의 일소 피해가 있는 것

㉤ 병충해과 : 더듬이병, 궂양병, 검은점무늬병, 곰팡이병, 깍지벌레, 으름나방 등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상해과 : 열상, 자상 또는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꼭지가 떨어진 것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경미한 일소, 약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경미한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꼭지가 퇴색된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금 감

[규격번호 : 1055]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공급되는 금감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음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음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섹터	별도로 정하는 등급별 착색비율 [표 2]에서 “특”에 미달하는 것이 1% 이하인 것	별도로 정하는 등급별 착색비율 [표 2]에서 “상”에 미달하는 것이 3% 이하인 것	별도로 정하는 등급별 착색비율 [표 2]에서 “보통”에 미달하는 것이 5% 이하인 것
③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④ 경결점과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호칭	2L	L	M	S
1개의 무게(g)	20이상	15이상~20미만	10이상~15미만	10미만

[표 2] 등급별 착색비율

등 급	특	상	보통
착색비율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 용어의 정의 >

- ① 착색비율은 날개별로 전체 면적에 대한 품종고유의 색깔이 착색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 ㉢ 미숙과 : 당도, 색택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덜익은 과일을 수확하여 아세틸렌, 에틸렌 등의 가스로 후숙한 것을 포함한다)
 - ㉣ 병충해과 :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 상해과 : 열상, 자상 또는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꼭지가 떨어진 것
 - ㉦ 기타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경미한 일소, 약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 경미한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 꼭지가 퇴색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매 실

[규격번호 : 106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매실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 또는 지름이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 또는 지름이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숙도	과육의 숙도가 적당하고 손으로 만져 단단한 것	과육의 숙도가 적당하고 손으로 만져 단단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④ 경결점과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호칭	2L	L	M	S	2S
1개의 무게(g)	25이상	20이상~25미만	15이상~20미만	10이상~15미만	10미만
1개의 지름(mm)	36이상	33이상~36미만	30이상~33미만	27이상~30미만	27미만

< 용어의 정의 >

① 속도가 적당하다는 것은 과피가 황변되거나, 과육이 연화되기 이전을 말한다.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과숙과 : 정도, 선택으로 보아 성숙이 지나친 것

㉣ 병충해과 : 검은별무늬병(흑성병), 균핵병, 큰무늬병(반문병), 각지벌레 등 병해충의 피해가 두드러진 것

㉤ 상해과 : 열상, 자상, 압상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기타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경미한 녹, 일소, 약해, 생리장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미숙과 : 성숙이 덜된 것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경미한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단 감

[규격번호 : 107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단감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음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음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섹택	착색비율이 80% 이상인 것	착색비율이 60% 이상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숙도	숙도가 양호하고 균일한 것	숙도가 양호하고 균일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⑤ 경결점과	3% 이하인 것	5%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호칭	2L	L	M	S	2S
1개의 무게(g)	250이상	200이상~250미만	165이상~200미만	142이상~165미만	142미만

< 용어의 정의 >

① 착색비율은 날개별로 전체 면적에 대한 품종 고유의 색깔이 착색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 미숙과 : 당도(맛), 경도 및 색택으로 보아 성숙이 덜된 것(덜익은 과일을 수확하여 아세틸렌, 에틸렌 등의 가스로 후숙한 것을 포함한다)

㉣ 병충해과 : 탄저병, 검은별무늬병, 감꼭지나방 등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상해과 : 열상, 자상 또는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을 제외한다.

㉥ 꼭지 : 꼭지가 빠지거나, 꼭지 부위가 갈라진 것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기타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경미한 일소, 약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그을음병, 각지벌레 등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꼭지가 돌아갔거나, 꼭지와 과육 사이에 틈이 있는 것

㉤ 경미한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자 두

[규격번호 : 111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자두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낱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음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음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색택	착색비율이 40% 이상인 것	착색비율이 20% 이상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④ 경결점과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품 종			호 칭	2L	L	M	S
1개의 무게(g)	대과종	포모사, 솔담, 산타로사, 켈시(피자두) 및 이와 유사한 품종		150이상	120이상~150미만	90이상~120미만	90미만
	중과종	대석조생, 비유티 및 이와 유사한 품종		100이상	80이상~100미만	60이상~80미만	60미만

<용어의 정의 >

① 착색비율은 날개별로 전체 면적에 대한 품종 고유의 색깔이 착색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 미숙과 : 맛, 육질, 설탕 등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

㉣ 병충해과 : 검은무늬병, 심식충 등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상해과 : 찰상, 자상, 압상 등의 상처가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기타 : 오염된 것 등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약해, 일소 등 피해가 경미한 것

㉢ 병충해,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참다래

[규격번호 : 112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참다래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음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음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선택	품종 고유의 선택이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선택이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향미	품종 고유의 향미가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향미가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털	털의 탈락이 없는 것	털의 탈락이 경미한 것	털의 탈락이 심하지 않은 것
⑤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⑥ 경결점과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2S
1개의 무게(g)	홍양	95이상	75이상 ~ 95미만	55이상 ~ 75미만	40이상 ~ 55미만	40미만
	스위트골드	115이상	95이상 ~ 115미만	75이상 ~ 95미만	60이상 ~ 75미만	60미만
	헤이워드, 해금	125이상	105이상 ~ 125미만	85이상 ~ 105미만	70이상 ~ 85미만	70미만
	골드윈	140이상	120이상 ~ 140미만	100이상 ~ 120미만	90이상 ~ 100미만	90미만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과숙과 : 육질, 정도로 보아 성숙이 지나치게 된 것

㉣ 병충해과 : 연부병, 각지벌레, 풍뎅이등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상해과 : 열상, 자상 또는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기타 : 바람이 들어 육질에 동공이 생긴 것, 시든 것, 기타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일소, 약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병해충의 피해가 경미한 것

㉣ 경미한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녹물에 오염된 것, 이물이 붙어 있는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블루베리

[규격번호 : 113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하이부시 블루베리와 레빗아이 블루베리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 낱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2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음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3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음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선택	품종 고유의 선택을 갖추고, 과분의 부착이 양호한 것	품종 고유의 선택을 갖추고, 과분의 부착이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낱알의 형태	낱알 간 속도의 고르기가 뛰어난 것	낱알 간 속도의 고르기가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⑤ 경결점	없는 것	5%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과실 횡경 기준(mm)	17이상	14이상 ~ 17미만	11이상 ~ 14미만	11미만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미숙과 : 당도, 설탕 등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
- ㉣ 병충해과 : 미이라병, 노린재 등 병해충의 피해가 과육까지 미친 것
- ㉤ 피해과 : 일소, 열과, 오염된 것 등의 피해가 현저한 것
- ㉥ 상해과 : 열상, 자상 또는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 한다.
- ㉦ 과숙과 : 경도, 설탕으로 보아 성숙이 지나친 것
- ㉧ 기타 : 중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병해충의 피해가 경미한 것
- ㉢ 경미한 찰상 등 중 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마른고추

[규격번호 : 201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된 붉은 마른고추를 대상으로 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평균 길이에서 $\pm 1.5\text{cm}$ 를 초과하는 것이 10% 이하인 것	평균 길이에서 $\pm 1.5\text{cm}$ 를 초과하는 것이 20% 이하인 것	특·상에 미달 하는 것
② 선택	품종 고유의 선택으로 선홍색 또는 진홍색으로 서 광택이 뛰어난 것	품종고유의 선택으로 선홍색 또는 진홍색으로 서 광택이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 하는 것
③ 수분	15% 이하로 건조된 것	15% 이하로 건조된 것	15% 이하로 건조된 것
④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3.0% 이하인 것
⑤ 경결점과	5.0% 이하인 것	15.0% 이하인 것	25.0% 이하인 것
⑥ 탈락씨	0.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⑦ 이물	0.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내인 것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반점 및 변색 : 황백색 또는 녹색이 과면의 10% 이상인 것 또는 과열로 검게 변한 것이 과면의 20% 이상인 것

㉡ 박피(薄皮) : 미숙으로 과피(껍질)가 얇고 주름이 심한 것

㉢ 상해과 : 잘라진 것 또는 길이의 1/2 이상이 갈라진 것

㉣ 병충해 : 흑색탄저병, 무름병, 담배나방 등 병해충의 피해가 과면의 10% 이상인 것

㉤ 기타 : 심하게 오염된 것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반점 및 변색 : 황백색 또는 녹색이 과면의 10% 미만인 것 또는 과열로 검게 변한 것이 과면의 20% 미만인 것(꼭지 또는 끝부분의 경미한 반점 또는 변색은 제외한다.)

㉡ 상해과 : 길이의 1/2 미만이 갈라진 것

㉢ 병충해 : 흑색탄저병, 무름병, 담배나방 등 병해충의 피해가 과면의 10% 미만인 것

㉣ 모양 : 심하게 구부러진 것, 꼭지가 빠진 것

㉤ 기타 :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③ 탈락씨 : 떨어져 나온 고추씨를 말한다.

④ 이물 : 고추 외의 것(떨어진 꼭지 포함)을 말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고 추

[규격번호 : 2012]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풋고추(청양고추, 오이맛 고추 등), 파리고추, 홍고추(물고추)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평균 길이에서 $\pm 2.0\text{cm}$ 를 초과하는 것이 10% 이하인 것(파리고추는 20% 이하)	평균 길이에서 $\pm 2.0\text{cm}$ 를 초과하는 것이 20% 이하(파리고추는 50% 이하)로 혼입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길이 (파리고추에 적용)	4.0~7.0cm인 것이 80% 이상		
③ 선택	- 풋고추, 파리고추 : 짙은 녹색이 균일하고 윤기가 뛰어난 것 - 홍고추(물고추) : 품종 고유의 색깔이 선명하고 윤기가 뛰어난 것	- 풋고추, 파리고추 : 짙은 녹색이 균일하고 윤기가 있는 것 - 홍고추(물고추) : 품종 고유의 색깔이 선명하고 윤기가 있는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신선도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탄력이 뛰어난 것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탄력이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⑥ 경결점과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길이 : 꼭지를 제외한다.
-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부패, 변질과 :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병충해 : 탄저병, 무름병, 담배나방 등 병해충의 피해가 현저한 것
 - ㉢ 기타 : 오염이 심한 것, 씨가 검게 변색된 것
-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과숙과 : 붉은색인 것(풋고추, 파리고추에 적용)
 - ㉡ 미숙과 : 선택으로 보아 성숙이 덜된 녹색과(홍고추에 적용)
 - ㉢ 상해과 : 꼭지 빠진 것, 잘라진 것, 갈라진 것
 - ㉣ 발육이 덜 된 것
 - ㉤ 기형과 등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오 이

[규격번호 : 202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오이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평균 길이에서 $\pm 2.0\text{cm}$ (다다기계는 $\pm 1.5\text{cm}$)를 초과하는 것이 10% 이하인 것	평균 길이에서 $\pm 2.0\text{cm}$ (다다기계는 $\pm 1.5\text{cm}$)를 초과하는 것이 20% 이하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선택	품종 고유의 선택이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선택이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한 것
③ 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춘 것으로 처음과 끝의 굽기가 일정하며 구부러진 정도가 다다기·취청계는 1.5cm 이내, 가시계는 2.0cm 이내인 것	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춘 것으로 처음과 끝의 굽기가 대체로 일정하며 구부러진 정도가 다다기·취청계는 3.0cm 이내, 가시계는 4.0cm 이내인 것	특·상에 미달한 것
④ 신선도	꼭지와 표피가 메마르지 않고 싱싱한 것	꼭지와 표피가 메마르지 않고 싱싱한 것	특·상에 미달한 것
⑤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⑥ 경결점과	없는 것	5%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① 구부러진 정도 : 다음 그림과 같다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과숙과 : 색택 또는 육질로 보아 성숙이 지나친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변질된 것
- ㉢ 상해과 : 절상, 자상,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병충해과 : 흰가루병, 잿빛곰팡이병 등 병해충의 피해를 입은 것
- ㉤ 공동과 : 과실 내부에 공극이 있는 것
- ㉥ 모양 : 열과, 기형과 등 모양이 불량한 것
- ㉦ 기타 : 오염된 것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형상불량 정도가 경미한 것
- ㉡ 병충해,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호 박

[규격번호 : 203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호박(애호박, 풋호박, 쥬키니)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 쥬키니 : 평균 길이에서 $\pm 2.5\text{cm}$를 초과하는 것이 10% 이하인 것 - 애호박 : 평균 길이에서 $\pm 2.0\text{cm}$를 초과하는 것이 10% 이하인 것 - 풋호박 : 평균 무게에서 $\pm 50\text{g}$을 초과하는 것이 10% 이하인 것	- 쥬키니 : 평균 길이에서 $\pm 2.5\text{cm}$를 초과하는 것이 20% 이하인 것 - 애호박 : 평균 길이에서 $\pm 2.0\text{cm}$를 초과하는 것이 20% 이하인 것 - 풋호박 : 평균 무게에서 $\pm 50\text{g}$을 초과하는 것이 20% 이하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선택	품종 고유의 색깔로 광택이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색깔로 광택이 뛰어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모양	- 쥬키니 : 처음과 끝의 굽기가 거의 비슷하며, 구부러진 정도가 2.0cm 이내인 것 - 애호박 : 처음과 끝의 굽기가 거의 비슷하며, 구부러진 것이 없는 것 - 풋호박 : 구형 또는 난형(卵形)으로 모양이 균일한 것	- 쥬키니 : 처음과 끝의 굽기가 거의 비슷하며, 구부러진 정도가 4.0cm 이내인 것 - 애호박 : 처음과 끝의 굽기가 대체로 비슷하며, 구부러진 정도가 2.0cm 이상인 것이 20% 이내인 것 - 풋호박 : 구형 또는 난형(卵形)으로 모양이 대체로 균일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신선도	꼭지와 표피가 메마르지 않고 싱싱한 것	꼭지와 표피가 메마르지 않고 싱싱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⑥ 경결점과	없는 것	5%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호 칭		2L	L	M	S
품 종					
쥬키니	1개의 길이 (cm)	30이상	25이상~30미만	20이상~25미만	20미만
애호박		24이상	20이상~24미만	16이상~20미만	12이상~16미만
풋호박	1개의 무게 (g)	500이상	400이상~500미만	300이상~400미만	300미만

< 용어의 정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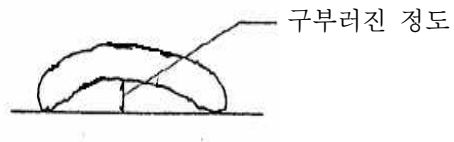
① 품종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쥬키니 : 폐포계 쥬키니 및 이와 유사한 품종을 말한다.

㉡ 애호박 : 동양계 품종으로 장과형 및 이와 유사한 청과용을 말한다.

㉢ 풋호박 : 동양계 품종으로 구형·난형(卵形) 및 이와 유사한 청과용을 말한다.

② 구부러진 정도 : 다음 그림과 같다



③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변질된 것

㉢ 과숙과 : 색깔 또는 무늬로 보아 과육의 성숙이 지나친 것

㉣ 병충해과 : 무름병 등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상해과 : 자상, 압상, 찰상 등의 상처가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기타 : 기형과, 오염과 등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④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형상불량 정도가 경미한 것

㉡ 병충해,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단호박·미니단호박

[규격번호 : 2034]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단호박과 미니단호박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특 · 상에 미달하는 것
② 모양 · 색택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이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이 양호한 것	특 · 상에 미달하는 것
③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 · 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④ 경결점과	없는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호 칭	2L	L	M	S	2S
단호박	1개의 무게(kg)		2.0이상	1.5이상~2.0미만	1.0이상~1.5미만	1.0미만	-
미니단호박			0.6이상	0.5이상~0.6미만	0.4이상~0.5미만	0.3이상~0.4미만	0.3미만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 ㉢ 병충해과 :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 미숙과 : 정도, 선택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
- ㉤ 상해과 : 열상, 자상, 압상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가 지

[규격번호 : 2041]

I. 적용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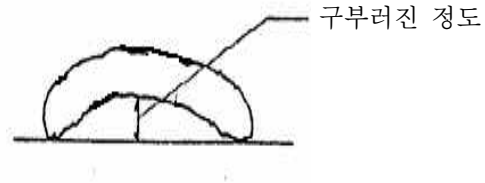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가지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평균 길이에서 $\pm 2.5\text{cm}$ 를 초과하는 것이 10% 이하인 것	평균 길이에서 $\pm 2.5\text{cm}$ 를 초과하는 것이 20% 이하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선택	품종 고유의 흑자색으로 광택이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흑자색으로 광택이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모양	처음과 끝의 굽기가 거의 비슷하며, 구부러진 정도가 2.0cm 이내인 것	처음과 끝의 굽기가 거의 비슷하며, 구부러진 정도가 4.0cm 이내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신선도	표면에 주름이 없고 싱싱하며, 탄력이 있는 것	표면에 주름이 없고 싱싱하며, 탄력이 있는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부패·변질된 것을 제외하고 5% 이하인 것
⑥ 경결점과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① 구부러진 정도 : 다음 그림과 같다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변질된 것
- ㉢ 과숙과 : 색깔 또는 육질로 보아 성숙이 지나친 것
- ㉣ 병충해과 : 갈색무늬병 등 병해충의 피해가 과육까지 미친 것
- ㉤ 상해과 : 열상, 자상 또는 압상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기타 : 기형과, 색택불량과, 오염과 등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형상 불량 정도가 경미한 것
- ㉡ 병충해,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
- ㉢ 표면의 일부에 그친 경미한 갈색반점이 있는 것

농산물 표준규격
토마토

[규격번호 : 205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토마토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음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음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섀택	출하 시기별로 [표 2]의 착색기준에 맞고, 착색 상태가 균일한 것	출하 시기별로 [표 2]의 착색기준에 맞고, 착색 상태가 균일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신선도	꼭지가 시들지 않고 껍질의 탄력이 뛰어난 것	꼭지가 시들지 않고 껍질의 탄력이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꽃자리 흔적	거의 눈에 띄지 않은 것	두드러지지 않은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⑥ 경결점과	없는 것	5%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3L	2L	L	M	S	2S
1과의 무게(g)	일반계	300이상	250이상~300미만	210이상~250미만	180이상~210미만	150이상~180미만	100이상~150미만
	중소형계 (흑토마토)	90이상	80이상~90미만	70이상~80미만	60이상~70미만	50이상~60미만	50미만
	소형계 (캄파리)	-	50이상	40이상~50미만	30이상~40미만	20이상~30미만	20미만

[표 2] 착색 기준

출하시기	착 색 비 율	
	완숙 토마토	일반 토마토
3월~5월	전체 면적의 60% 내외	전체 면적의 20% 내외
6월~10월	전체 면적의 50% 내외	전체 면적의 10% 내외
11월~익년 2월	전체 면적의 70% 내외	전체 면적의 30% 내외

< 용어의 정의 >

- ① 착색비율은 날개별로 전체 면적에 대한 품종 고유의 색깔이 착색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과숙과 : 색깔 또는 육질로 보아 성숙이 지나친 것
 - ㉣ 병충해과 : 배꼽썩음병 등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상해과 : 생리장해로 육질이 섬유질화한 것. 열상, 자상, 압상 등의 상처가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형상불량과 : 품종의 특성이 아닌 타원과, 선첨과(先尖果), 난형과(亂形果), 공동과(空胴果) 등 기형과 및 열과(裂果)
-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형상 불량 정도가 경미한 것
 - ㉡ 중결점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 병충해,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
 - ㉣ 기타 결점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방울토마토

[규격번호 : 2053]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방울토마토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낱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 또는 지름이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음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 또는 지름이 다른 것이 20%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음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섀택	품종 고유의 섀택으로 착색 정도가 뛰어나며 균일한 것	품종 고유의 섀택으로 착색 정도가 양호하며 균일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신선도	과피의 탄력이 뛰어난 것	과피의 탄력이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숙도	과육의 성숙정도가 적당하고 균일한 것	과육의 성숙정도가 적당하고 균일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⑥ 경결점과	없는 것	5%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호칭	2L	L	M	S	2S
1과의 무게 (g)	25이상	20이상~25미만	15이상~20미만	10이상~15미만	5이상~10미만
1과의 지름 (mm)	35이상	25이상~35미만	20이상~25미만	15이상~20미만	15미만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과숙과 : 선택 또는 육질의 정도로 보아 과육의 성숙이 지나친 것

㉣ 미숙과 : 성숙이 덜된 것

㉤ 병충해과 : 과피 또는 과육에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상해과 : 생리장애로 육질이 섬유질화한 것. 열상, 자상, 압상 등의 상처가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형상불량과 : 기형과 및 열과(裂果)

㉧ 기타 결점의 정도가 심한 것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형상불량의 정도가 경미한 것

㉡ 중결점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병충해,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

㉣ 기타 결점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송이토마토

[규격번호 : 2054]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송이토마토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모양	송이당 4개 이상의 날알이 달린 것	송이당 4개 이상의 날알이 달린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선택	착색비율이 70% 이상인 것	착색비율이 70% 이상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신선도	꼭지가 시들지 않고 탄력이 뛰어난 것	꼭지가 시들지 않고 탄력이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⑤ 경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호 칭	2L	L	M	S
1개의 무게(g)		50이상	40이상~50미만	30이상~40미만	30미만

< 용어의 정의 >

① 착색비율은 날개별로 전체 면적에 대한 품종 고유의 색깔이 착색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 병충해과 :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미숙과 : 경도, 설탕 등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

㉣ 상해과 : 열상, 자상, 압상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기타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참 외

[규격번호 : 206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참외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3%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음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음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색택	착색비율이 90% 이상인 것	착색비율이 80% 이상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신선도, 숙도	과육의 성숙 정도가 적당하며 과피에 갈변현상이 없고 신선도가 뛰어난 것	과육의 성숙 정도가 적당하며 과피에 갈변현상이 경미하고 신선도가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⑤ 경결점과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호칭 구분	2L	L	M	S	2S	3S
1개의 무게 (g)	500이상	330이상~500미만	250이상~330미만	200이상~250미만	165이상~200미만	165미만

< 용어의 정의 >

① 착색비율은 날개별로 전체 면적에 대한 품종 고유의 색깔이 착색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과숙과 : 성숙이 지나치거나 과육이 연화된 것

㉣ 미숙과 : 당도, 경도, 착색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

㉤ 병충해과 : 탄저병 등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상해과 : 열상, 자상 또는 압상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모양 : 모양이 불량한 것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병충해,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딸 기

[규격번호 : 207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딸기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20% 이하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선택	품종 고유의 선택이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선택이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신선도	꼭지가 시들지 않고 표면에 윤기가 있는 것	꼭지가 시들지 않고 표면에 윤기가 있는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⑤ 경결점과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호 칭	2L	L	M	S
1개의 무게(g)	25이상	17이상~25미만	12이상~17미만	12미만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 병충해과 :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미숙과 : 당도, 경도, 설탕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

㉣ 상해과 : 열상, 자상, 압상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기타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수 박

[규격번호 : 208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박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선택	과피는 품종 고유의 색깔이 선명하고 윤기가 뛰어난 것	과피는 품종 고유의 색깔이 선명하고 윤기가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신선도	꼭지 절단부분의 마른정도가 양호하고, 과피가 단단하고 신선한 것(꼭지는 짧게 절단하는 것을 권장)	꼭지 절단부분의 마른정도가 양호하고, 과피가 단단하고 신선한 것(꼭지는 짧게 절단하는 것을 권장)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숙도	과육은 성숙에 따른 품종 고유의 색깔이 뚜렷하고, 성숙 정도가 적당한 것	과육은 성숙에 따른 품종 고유의 색깔이 뚜렷하고, 성숙 정도가 적당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⑤ 경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4L	3L	2L	L	M	S	2S
1개의 무게(kg)	11이상	10이상~11미만	9이상~10미만	8이상~9미만	7이상~8미만	6이상~7미만	6미만

※ 호칭 뒤의 명칭은 유통현실에 따를 수 있음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부패, 변질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과숙과 : 성숙이 지나치거나 과육이 연화된 것
- ㉢ 미숙과 : 타공음, 무늬의 선명도 등으로 보아 과육의 성숙이 덜된 것
- ㉣ 병충해 : 역병 등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 상해 : 열상, 자상 등의 상처가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형상불량 : 기형과, 공동과(속이 빈 것), 섹택불량 등 그 결점의 정도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병충해,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③ ‘씨없는 수박’이란 껍질이 단단하며, 성숙한 배(胚)를 가진 것으로 수박을 4등분(꼭지부위에서 세로로 한번, 중간부위에서 가로로 한번)으로 자른 단면에 보이는 씨가 7개 이하인 것을 말한다(단, 미숙한 하얀색 종피 종자는 제외)

농산물 표준규격
조롱수박

[규격번호 : 2082]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조롱수박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없는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없는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윤기가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윤기가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신선도	꼭지가 마르지 않고 싱싱한 것	꼭지가 마르지 않고 싱싱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⑤ 경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호칭	2L	L	M	S
1개의 무게(kg)	2.5이상	1.7이상~2.5미만	1.3이상~1.7미만	1.3미만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 ㉡ 병충해과 :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 미숙과 : 경도, 설탕 등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
- ㉣ 상해과 : 열상, 자상, 압상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 중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멜론

[규격번호 : 209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멜론에 적용하고,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선택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이 뛰어나며 네트계 멜론은 그물 모양이 뚜렷하고 균일한 것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이 양호하며 네트계 멜론은 그물 모양이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신선도, 숙도	꼭지가 시들지 아니하고 과육의 성숙도가 적당한 것	꼭지가 시들지 아니하고 과육의 성숙도가 적당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⑤ 경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1개의 무게(kg)	네트계	2.6이상	2.0이상~2.6미만	1.6이상~2.0미만	1.6미만
	백피계·황피계	2.2이상	1.8이상~2.2미만	1.3이상~1.8미만	1.3미만
	파파야계	1.0이상	0.75이상~1.0미만	0.6이상~0.75미만	0.6미만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과숙과 : 과육의 연화 등 성숙이 지나친 것
- ㉣ 미숙과 : 과육의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
- ㉤ 병충해과 : 탄저병, 딱정벌레 등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 상해과 : 열상, 자상, 압상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모 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심한 것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병해충,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피망·파프리카

[규격번호 : 210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피망과 파프리카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선택	품종 고유의 선택이 선명하고 윤기가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선택이 선명하고 윤기가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신선도	꼭지가 시들지 아니하고 탄력이 뛰어난 것	꼭지가 시들지 아니하고 탄력이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⑤ 경결점과	없는 것	5%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피망)

구분 \ 호칭	L	M	S
1개의 무게(g)	100이상	50이상~100미만	50미만

[표 2] 크기 구분(파프리카)

구분 \ 호칭	2L	L	M	S	2S
1개의 무게(g)	240이상	180이상~240미만	140이상~180미만	110이상~140미만	110미만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 ㉢ 병충해과 : 흑색탄저병, 담배나방 등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 상해과 : 열상, 자상, 압상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양 파

[규격번호 : 301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양파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20% 이하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인 것	품종 고유의 모양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색택	품종 고유의 선명한 색택으로 윤기가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선명한 색택으로 윤기가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손질	흙 등 이물이 잘 제거된 것	흙 등 이물이 제거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구는 포함할 수 없음)
⑥ 경결점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1구의 지름 (cm)	9이상	8이상~9미만	6이상~8미만	6미만
1개의 무게(g)	340이상	230이상~340미만	110이상~230미만	110미만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부패·변질구 : 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병충해 :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 상해구 : 자상, 압상이 육질에 미친 것, 심하게 오염된 것
- ㉣ 형상 불량구 : 쌍구, 열구, 이형구, 찌가 난 것, 추대된 것
- ㉤ 기타 : 경결점구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병해충의 피해가 외피에 그친 것
-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마 늘

[규격번호 : 302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마늘(통마늘, 풋마늘)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낱개의 크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크기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음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2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크기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음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이 뛰어나며, 각 마늘쪽이 충실하고 고른 것	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각 마늘쪽이 대체로 충실하고 고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손질	- 통마늘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2.0cm 이내로 절단한 것 - 풋마늘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5.0cm 이내로 절단한 것	- 통마늘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2.0cm 이내로 절단한 것 - 풋마늘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5.0cm 이내로 절단한 것	- 통마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2.0cm 이내로 절단한 것 - 풋마늘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5.0cm이내로 절단한 것
④ 열구 (난지형에 한함)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쪽마늘	4%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15% 이하인 것
⑥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구는 포함할 수 없음)
⑦ 경결점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1개의 지름 (cm)	한지형		5.0이상	4.0이상~5.0미만	3.0이상~4.0미만	2.0이상~3.0미만
	난지형	남도종	5.5이상	4.5이상~5.5미만	4.0이상~4.5미만	3.5이상~4.0미만
		대서종	6.0이상	5.0이상~6.0미만	4.0이상~5.0미만	3.5이상~4.0미만

※ 크기는 마늘통의 최대 지름을 말한다.

< 용어의 정의 >

① 마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 통마늘 : 적당히 건조되어 저장용으로 출하되는 마늘
- ㉡ 풋마늘 : 수확 후 신선한 상태로 출하되는 마늘(4~6월중에 출하되는 것에 한함)
- ㉢ 쪽마늘 : 포장 단위별로 전체 마늘 중 마늘통의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온 마늘쪽

② 열구 : 마늘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줄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으로 포장단위 전체 마늘에 대한 개수 비율을 말한다. 단, 마늘통 높이의 3/4 이상이 외피에 싸여 있는 것은 제외한다.

③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병충해구 : 병해충의 증상이 뚜렷하거나 진행성인 것
- ㉡ 부패, 변질구 : 육질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형상불량구 : 기형 및 벌마늘(완전한 줄기가 2개 이상 발생한 2차 생성구), 싹이 난 것, 뿌리가 난 것
- ㉣ 상해구 : 기계적 손상이 마늘쪽의 육질에 미친 것

④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마늘쪽이 마늘통의 줄기로부터 1/4 이상 떨어져 나간 것
- ㉡ 외피에 기계적 손상을 입은 것
- ㉢ 뿌리 턱이 빠진 것
- ㉣ 기타 중결점에 속하지 않는 결점이 있는 것

농산물 표준규격
무

[규격번호 : 304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무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20% 이하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모양	껍질이 매끄러우며 잔뿌리가 적은 것	껍질이 매끄러우며 잔뿌리가 적은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신선도	뿌리가 시들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	뿌리가 시들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잎 길이	저장 무는 3.0cm 이하 (김장용은 적용하지 아니 함)	저장 무는 3.0cm 이하 (김장용은 적용하지 아니 함)	저장 무는 3.0cm 이하 (김장용은 적용하지 아니 함)
⑤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 (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⑥ 경결점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무게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1개의 무게(kg)	3.0이상	2.0이상~3.0미만	1.5이상~2.0미만	1.5미만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부패·변질 : 뿌리가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병해, 충해, 냉해 등의 피해가 있는 것

㉢ 형상불량 : 부러진 것, 심하게 굽은 것, 원뿌리가 2개 이상인 것, 찢어진 것, 바람들이가 있는 것, 추대된 것

㉣ 기타 : 기타 경결점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병해충의 피해가 외피에 그친 것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결구배추

[규격번호 : 305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결구배추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결구치밀도	양손으로 만져 단단한 정도가 뛰어난 것	양손으로 만져 단단한 정도가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신선도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다듬기	겉잎과 오염된 잎을 제거하고 뿌리를 깨끗이 자른 것	겉잎과 오염된 잎을 제거하고 뿌리를 깨끗이 자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⑥ 경결점	없는 것	없는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호칭 구분		2L	L	M	S
1개의 무게(kg)	일반배추	4.0이상	3.0이상~4.0미만	2.0이상~3.0미만	2.0미만
	고랭지배추	3.0이상	2.0이상~3.0미만	1.0이상~2.0미만	1.0미만

※ 일반배추는 봄·가을배추, 월동배추를 말한다

< 용어의 정의 >

- ①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부패·변질 : 배추잎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있는 것
 - ㉢ 냉해, 상해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모양 : 개열된 것, 추대된 것,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 경결점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 ②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병해충의 피해가 외피에 그친 것
 -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양배추

[규격번호 : 306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양배추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결구	양손으로 만져 단단한 정도가 뛰어난 것	양손으로 만져 단단한 정도가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신선도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다듬기	겉잎과 오염된 잎을 제거하고 뿌리를 깨끗하게 자른 것	겉잎과 오염된 잎을 제거하고 뿌리를 깨끗하게 자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⑥ 경결점	없는 것	없는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호칭 구분	2L	L	M	S
1개의 무게(kg)	3.0이상	2.0이상~3.0미만	1.0이상~2.0미만	1.0미만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부패·변질 : 양배추잎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있는 것
- ㉢ 냉해, 상해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모양 : 개열된 것, 추대된 것,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 경결점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병충해가 외피에 그친 것
-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당 근

[규격번호 : 307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당근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20% 이하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선택	품종 고유의 선택이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선택이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모양	표면이 매끈하고 꼬리 부위의 비대가 양호한 것	표면이 매끈하고 꼬리 부위의 비대가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손질	앞은 1.0cm 이하로 자르고 흠과 수염뿌리를 제거한 것	앞은 1.0cm 이하로 자르고 흠과 수염뿌리를 제거한 것	앞은 1.0cm 이하로 자른 것
⑤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⑥ 경결점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1개의 무게(g)	250이상	200이상 ~ 250미만	150이상 ~ 200미만	100이상 ~ 150미만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부패·변질 : 뿌리가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병해, 충해, 냉해 등의 피해가 있는 것

㉢ 형상불량 : 부러진 것, 심하게 굽은 것, 원뿌리가 2개 이상인 것 쪼개진 것, 바람들이가 있는 것, 녹변이 심한 것

㉣ 기타 : 기타 경결점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병충해가 외피에 그친 것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녹색꽃양배추(브로콜리)

[규격번호 : 308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녹색꽃양배추(브로콜리)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결구	양손으로 만져 단단한 정도가 뛰어난 것	양손으로 만져 단단한 정도가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신선도	화구가 황화되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	화구가 황화되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	화구의 황화 정도가 전체 면적의 5% 이하인 것
④ 다듬기	화구 줄기 7cm 이하에 나머지 부위는 깨끗하게 다듬은 것	화구 줄기 7cm 이하에 나머지 부위는 깨끗하게 다듬은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10%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⑥ 경결점	없는 것	없는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화구 1개의 무게(g)	330이상	270이상 ~ 330미만	200이상 ~ 270 미만	200미만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부패·변질 : 화구와 줄기가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있는 것
- ㉢ 냉해, 상해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모양 : 화구의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 경결점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병충해가 외피에 그친 것
-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비트

[규격번호 : 309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비트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이하인 것 단, 크기구분표의 해당 크기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음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20%이하인 것 단, 크기구분표의 해당 크기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음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신선도	손으로 만져 단단한 정도가 뛰어난 것	손으로 만져 단단한 정도가 적당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손질	흙, 줄기 등 이물질 제거 정도가 뛰어나고 표면이 적당히 건조된 것	흙, 줄기 등 이물질 제거 정도가 뛰어나고 표면이 적당히 건조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⑤ 경결점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1개의 무게(g)	600이상	500이상~600미만	400이상~500미만	400미만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부패·변질 : 비트 표면 및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있는 것
- ㉢ 상해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모양 : 열개된 것,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 경결점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병충해가 외피에 그친 것
-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감 자

[규격번호 : 401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감자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낱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20% 이하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손질	흙 등 이물질 제거 정도가 뛰어나고 표면이 적당하게 건조된 것	흙 등 이물질 제거 정도가 양호하고 표면이 적당하게 건조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④ 경결점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호칭 품종		3L	2L	L	M	S	2S
1개의 무게(g)	수미 및 이와 유사한 품종	280이상	220이상~280미만	160이상~220미만	100이상~160미만	40이상~100미만	40미만
	대지 및 이와 유사한 품종	500이상	400이상~500미만	300이상~400미만	200이상~300미만	40이상~200미만	40미만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이품종 : 품종이 다른 것

㉡ 부패, 변질 : 감자가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병충해 : 둘레썩음병, 겹등근무늬병, 더듬이병, 굽벙이 등 병해충의 피해가 육질까지 미친 것

㉣ 상해 : 열상, 자상 등 상처가 있는 것. 다만, 경미하거나 상처 부위가 아문 것은 제외한다.

㉤ 기형 : 2차 생장 등 그 형상 불량 정도가 현저한 것

㉥ 싹이 난 것, 광선에 의해 녹변된 것 등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병충해가 외피에 그친 것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고구마

[규격번호 : 402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고구마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20% 이하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손질	흙, 줄기 등 이물질 제거 정도가 뛰어나고 표면이 적당하게 건조된 것	흙, 줄기 등 이물질 제거정도가 양호하고 표면이 적당하게 건조된 것	흙, 줄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면이 적당하게 건조된 것
③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④ 경결점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호칭	2L	L	M	S
1개의 무게(g)	250이상	150이상~250미만	100이상~150미만	40이상~100미만

※ 호칭과 병행하여 장폭비(길이÷두께)가 3.0이하인 것이 80%이상은 “둥근형”, 3.1이상인 것이 80% 이상은 “긴형”의 형태를 표기할 수 있음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이품종 : 품종이 다른 것

㉡ 부패, 변질 : 고구마가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병충해 : 검은무늬병, 검은점박이병, 근부병, 굽벙이 등 병해충의 피해가 육질까지 미친 것

㉣ 자상, 찰상 등 상처가 심한 것

②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병충해가 외피에 그친 것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참 개

[규격번호 : 501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참깨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으로 껍질이 얇고, 충실하며 고르고 윤기가 있는 것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으로 껍질이 얇고, 충실하며 고르고 윤기가 있는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수분	10.0% 이하인 것	10.0% 이하인 것	10.0% 이하인 것
③ 용적중 (g/ℓ)	600 이상인 것	580 이상인 것	550 이상인 것
④ 이종피색립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⑤ 이물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⑥ 조건	생산 연도가 다른 참깨가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용적중 : 「별표6」 「항목별 품위계측 및 감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1ℓ의 무게를 말한다.
- ③ 이종피색립 : 껍질의 색깔이 현저하게 다른 참깨를 말한다.
- ④ 이물 : 참깨 외의 것을 말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피땅콩

[규격번호 : 502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피땅콩을 대상으로 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으로 크기가 균일하고 충실한 것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으로 크기가 균일하고 충실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수분	10.0% 이하인 것	10.0% 이하인 것	10.0% 이하인 것
③ 빈 꼬투리	3.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10.0% 이하인 것
④ 피해 꼬투리	3.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10.0% 이하인 것
⑤ 이물	0.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빈 꼬투리 : 수정불량 등으로 알땅콩이 정상 발육되지 않은 것
- ③ 피해꼬투리 : 병해충, 부패, 변질, 파손 등 알땅콩에 영향을 현저하게 미친 것
- ④ 이물 : 땅콩 외의 것을 말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알땅콩

[규격번호 : 5022]

I.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알땅콩을 대상으로 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L'인 것이 95% 이상인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L', 'M'인 것이 90% 이상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모양	날알의 모양과 크기가 균일하고 충실하며 껍질 벗겨진 것이 5.0% 이하인 것	날알의 모양과 크기가 균일하고 충실하며 껍질 벗겨진 것이 10.0% 이하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수분	9.0% 이하인 것	9.0% 이하인 것	9.0% 이하인 것
④ 피해립	3.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10.0% 이하인 것
⑤ 이물	0.1%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L	M	S
1립의 무게(g)	0.7이상	0.4이상~0.7미만	0.4미만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피해립 : 부패·변질립, 병충해립, 발아립, 미숙립, 깨진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 ③ 이물 : 알땅콩 외의 것을 말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들 깨

[규격번호 : 5031]

I.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들깨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모양	날알의 모양과 크기가 균일하고 충실한 것	날알의 모양과 크기가 균일하고 충실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수분	10.0% 이하인 것	10.0% 이하인 것	10.0% 이하인 것
③ 용적중(g/ℓ)	500 이상인 것	470 이상인 것	440 이상인 것
④ 피해립	0.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⑤ 이종곡립	0.0% 이하인 것	0.3%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⑥ 이종피색립	2.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10.0% 이하인 것
⑦ 이물	0.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⑧ 조건	생산 연도가 다른 들깨가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용적중 : 「별표6」 「항목별 품위계측 및 감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1ℓ의 무게를 말한다.
- ③ 피해립 : 병해립, 충해립, 변질립, 변색립, 파쇄립 등을 말한다. 다만, 들깨 품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④ 이종곡립 : 들깨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 ⑤ 이종피색립 : 껍질의 색깔이 현저하게 다른 들깨를 말한다.
- ⑥ 이물 : 들깨 외의 것을 말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수 삼

[규격번호 : 504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재배·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4년근 이상의 수삼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구분표의 해당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음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5%이하인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30% 이하인 것
② 모양	수삼의 고유 형태인 머리, 몸통, 다리의 모양을 갖춘 것	수삼의 고유 형태인 머리, 몸통, 다리의 모양을 갖춘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육질	조직이 치밀하고 탄력이 있는 것	조직이 치밀하고 탄력이 있는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색택	표피의 색이 연한 황색 또는 황백색인 것	표피의 색이 연한 황색 또는 황백색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손질	- 수삼 : 흙 등 이물질이 적당히 제거된 것 - 세척수삼 : 흙 등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것	- 수삼 : 흙 등 이물질이 적당히 제거된 것 - 세척수삼 : 흙 등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⑥ 신선도	수확당시 수준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수확당시 수준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⑦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10%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⑧ 경결점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개체(1뿌리)당 무게(g)	94이상	68이상~94미만	50이상~68미만	50미만
750g당 뿌리수	8이하	9이상~11미만	12이상~15미만	16이상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은 은피삼, 주름삼, 결빙된 삼, 눈(牙)이 완전히 개열된 삼, 상해, 충해, 적변삼, 균열삼 등으로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현저한 것을 말한다.

② 경결점은 다음의 것으로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경미한 것을 말한다.

㉠ 상해·충해 : 피해 정도가 몸통면적의 5% 이하인 것

㉡ 적변삼 : 표피가 몸통면적의 5% 이하로 붉게 변한 것

㉢ 균열삼 : 균열의 길이가 1cm 이하인 것

㉣ 난발삼 : 몸통이 거의 없고 뿌리가 수평으로 발달한 것(“상”이하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농산물 표준규격
느타리버섯

[규격번호 : 6011]

I.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느타리버섯, 애느타리버섯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느타리버섯, 애느타리버섯]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20% 이하인 것	[느타리버섯, 애느타리버섯]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40% 이하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갓의 모양	품종의 고유 형태와 색깔로 윤기가 있는 것	품종의 고유 형태와 색깔로 윤기가 있는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신선도	신선하고 탄력이 있는 것으로 갈변현상이 없고 고유의 향기가 뛰어난 것	신선하고 탄력이 있는 것으로 갈변현상이 없고 고유의 향기가 뛰어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이물	없는 것	없는 것	없는 것
⑤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⑥ 경결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갯의 지름(cm)	6이상	4이상~6미만	2이상~4미만	1이상~2미만

※ 갯의 지름 : 갯의 최대지름을 말한다(군생 버섯의 경우 가장 큰 갯의 최대지름을 말함)

< 용어의 정의 >

- ① 날개의 고르기는 포장단위별로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갯의 무게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단위별로 전체 버섯 중 결점이 있는 버섯의 무게비율을 말한다.
- ③ 이물 : 느타리버섯 이외의 것을 말한다.
- ④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병충해 : 곰팡이, 달팽이, 버섯파리 등의 피해가 현저한 것
 - ㉡ 상해 : 갯 또는 자루의 손상 정도가 현저한 것
 - ㉢ 기형 : 버섯 모양의 변형이 현저한 것
 - ㉣ 부패·변질된 것, 기타 피해 정도가 현저한 것
- ⑤ 경결점은 병충해,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을 말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규격번호 : 6013]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음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20%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음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갓의 모양	갓은 우산형으로 개열되지 않고, 자루는 굽고 곧은 것	갓은 우산형으로 개열이 심하지 않으며, 자루가 대체로 굽고 곧은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갓의 색깔	품종 고유의 색깔을 갖춘 것	품종 고유의 색깔을 갖춘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신선도	육질이 부드럽고 단단하며 탄력이 있는 것으로 고유의 향기가 뛰어난 것	육질이 부드럽고 단단하며 탄력이 있는 것으로 고유의 향기가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결점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⑥ 이물	없는 것	없는 것	없는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 호 칭	L	M	S
1개의 무게(g)	90이상	45이상~90미만	20이상~45미만

< 용어의 정의 >

- ① 날개의 고르기는 포장 단위별로 전체 버섯 중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의 무게 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단위별로 전체 버섯 중 결점이 있는 버섯의 무게비율을 말한다.
 - ㉠ 병충해 : 곰팡이, 달팽이, 버섯파리 등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상해 : 갓 또는 자루가 손상된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기형 : 갓 또는 자루가 심하게 변형된 것
 - ㉣ 오염된 것 등 기타 피해의 정도가 현저한 것
- ③ 이물 : 새송이버섯 이외의 것을 말한다.
- ④ 결점은 병충해, 상해, 기형, 오염된 것 등 기타 피해의 정도가 현저한 것을 말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양송이버섯

[규격번호 : 6021]

I.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양송이버섯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다만, 크기 구분표의 해당 크기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음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다만, 크기 구분표의 해당 크기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음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갓의 모양	버섯 갓과 자루사이의 피막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육질이 두껍고 단단하며 색택이 뛰어난 것	버섯 갓과 자루사이의 피막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육질이 두껍고 단단하며 색택이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신선도	버섯 갓이 퍼지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	버섯 갓이 퍼지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자루길이	1.0cm 이하로 절단된 것	2.0cm 이하로 절단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이물	없는 것	없는 것	없는 것
⑥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⑦ 경결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L	M	S
갓의 지름(cm)	5.0이상	3.0이상~5.0미만	3.0미만

※ 갓의 지름 : 갓의 최대지름을 말한다

< 용어의 정의 >

- ① 날개의 고르기는 포장 단위별로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무게 비율을 말한다.
- ② 자루길이 : 피막과 자루가 접합된 지점부터 절단부위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 ③ 이물 : 양송이버섯 이외의 것을 말한다.
- ④ 결점 혼입률은 포장단위별로 전체 버섯 중 결점이 있는 버섯의 무게비율을 말한다.
- ⑤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병충해 : 갈색무늬병, 곰팡이 또는 세균성 무늬병, 버섯모기, 진드기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현저한 것
 - ㉡ 자상, 찰상 등의 정도가 현저한 것
 - ㉢ 기형 : 버섯 모양의 변형이 현저한 것
 - ㉣ 부패·변질된 것, 기타 피해 정도가 현저한 것
- ⑥ 경결점은 병충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을 말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팽이버섯

[규격번호 : 603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팽이버섯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갓의 모양	갓이 퍼지지 않은 것	갓이 퍼지지 않은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갓의 크기	갓의 최대 지름이 1.0cm 이상인 것이 5개 이내인 것(150g 기준)	갓의 최대 지름이 1.0cm 이상인 것이 20개 이내인 것(150g 기준)	적용하지 않음
③ 선택	품종 고유의 선택이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선택이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신선도	육질의 탄력이 있으며 고유의 향기가 있는 것	육질의 탄력이 있으며 고유의 향기가 있는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이물	없는 것	없는 것	없는 것
⑥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⑦ 경결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이물 : 빵이버섯 이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착된 배지는 제외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단위별로 전체 버섯 중 결점이 있는 버섯의 무게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병충해 : 세균, 곰팡이, 버섯파리 등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심한 것
 - ㉡ 갓 또는 자루의 손상 정도가 현저한 것
 - ㉢ 기형 : 갓 모양의 변형이 현저한 것
 - ㉣ 부패·변질된 것, 기타 피해 정도가 현저한 것
- ④ 경결점은 병충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을 말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영지버섯

[규격번호 : 604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건조한 상태로 유통되는 원형 및 절편 영지버섯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 원형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절편 : 절편 길이가 9.0cm 이상인 것이 40% 이상이고, 5.0cm 이하인 것이 10% 이하인 것	- 원형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절편 : 절편 길이가 7.0cm 이상인 것이 40% 이상이고, 5.0cm 이하인 것이 10% 이하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갓의 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추고 조직이 단단한 것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추고 조직이 단단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절편의 넓이	2~8mm인 것	2~8mm인 것	2~8mm인 것
④ 갓의 두께	1.0cm 이상인 것	0.7cm 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⑤ 자루길이	2.0cm 이하인 것	3.0cm 이하인 것	3.0cm 이하인 것
⑥ 수분	13.0% 이하인 것	13.0% 이하인 것	13.0% 이하
⑦ 이물	없는 것	없는 것	없는 것
⑧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⑨ 경결점	없는 것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L	M	S
갯의 지름(cm)	15이상	10이상~15미만	5이상~10미만

※ 갯의 지름 : 갯의 최대 지름을 말한다

< 용어의 정의 >

- ① 날개의 고르기는 포장단위별로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무게비율을 말한다.
- ② 절편의 넓이 : 가장 넓은 곳의 크기 말한다.
- ③ 갯의 크기 : 갯의 가장 넓은 직경을 말한다.
- ④ 갯의 두께 : 정상적인 버섯 10개의 평균 두께를 말한다.
- ⑤ 자루길이 : 갯의 하단 부위에서 자루 절단부위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 ⑥ 이물 : 영지버섯 외의 것을 말한다.
- ⑦ 결점 혼입률은 포장단위별로 전체 버섯 중 결점이 있는 버섯의 무게비율을 말한다.
- ⑧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병충해, 부패·변질 등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현저한 것
 - ㉡ 갯의 변형 정도가 심한 것
 - ㉢ 기타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것
- ⑨ 경결점은 병충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을 말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쌀

[규격번호 : 7011]

쌀의 표준규격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기준’ [별표 1] 쌀 등급 기준에 따르고,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멍쌀에 적용하며, 가공용·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농산물 표준규격
찰 쌀

[규격번호 : 7012]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찰쌀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모양	강층이 완전히 제거되고 낱알의 윤기가 뛰어나고, 충실한 것	강층이 완전히 제거되고 낱알의 윤기가 뛰어나고, 충실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냄새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③수분	16.0% 이하인 것	16.0% 이하인 것	16.0% 이하인 것
④멍쌀혼입	3.0% 이하인 것	8.0% 이하인 것	15.0% 이하인 것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⑤싸라기	3.0% 이하인 것	7.0% 이하인 것	20.0% 이하인 것
⑥피해립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⑦열손립	0.0% 이하인 것	0.1%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⑧기타이물	0.1% 이하인 것	0.3%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⑨조건	생산 연도가 다른 찹쌀이 혼합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함수율을 말한다.
- ③ 멍쌀혼입 : 찹쌀 속에 포함된 멍쌀을 말한다.
- ④ 싸라기 : 1.7mm 금속망 체(KSA 5101-1 시험용체 규격)로 쳐서 체 위에 남는 것 중 완전한 낱알 평균길이의 3/4미만의 깨진 낱알을 말한다.
- ⑤ 피해립 : 오염된 낱알, 병해립, 충해립, 발아립, 생리장해립, 적조 및 흑조가 낱알 길이의 1/4이상 부착된 낱알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⑥ 열손립 : 열에 의하여 변색 또는 손상된 낱알을 말하며 미립표면적 1/4이상이 주황색(한국표준색표집 2.5Y8/4기준이상)으로 착색된 것을 말한다. 다만, 착색된 정도가 주황색 기준 이하이거나 1/4미만인 것은 피해립으로 적용한다.
- ⑦ 기타이물 : 찹쌀 이외의 것과 1.7mm 금속망 체(KSA 5101-1 시험용체 규격)로 쳐서 통과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돌, 광물질의 고형물은 3반복 조사 합산하여 1개 이내이어야 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현 미

[규격번호 : 7013]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메·찰현미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낱알 표면의 굽힘이 거의 없고 광택이 뛰어나며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낱알 표면의 굽힘이 거의 없고 광택이 뛰어나며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용적중 (g/ℓ)	810 이상인 것	800 이상인 것	780이상인 것
③정립	85.0% 이상인 것	75.0% 이상인 것	70.0%이상인 것
④수분	16.0% 이하인 것	16.0% 이하인 것	16.0% 이하인 것
⑤사미	3.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10.0% 이하인 것
⑥피해립	5.0% 이하인 것	7.0% 이하인 것	10.0% 이하인 것
⑦열손립	0.0% 이하인 것	0.1% 이하인 것	0.3% 이하인 것
⑧메현미 혼입	3.0% 이하인 것(찰현미에만 적용)	8.0% 이하인 것(찰현미에만 적용)	15.0% 이하인 것(찰현미에만 적용)
⑨돌	없는 것	없는 것	없는 것
⑩뉘,이종곡립(1.5kg중)	없는 것	없는 것	3개 이하인 것
⑪이물	0.0% 이하인 것	0.3%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⑫조건	생산연도가 다른 현미가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수 없음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용적중 : [별표 6] 「항목별 품위계측 및 감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1ℓ의 무게를 말한다.
- ③ 정립 : 피해립, 사미, 열손립, 미숙립, 낱, 이종곡립 및 이물을 제외한 낱알을 말한다.
- ④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 ⑤ 사미 : 체적의 4분의3 이상이 분상질 상태인 낱알을 말한다.
- ⑥ 피해립 : 손상된 낱알(발아립, 병해립, 충해립, 부패립, 금간 낱알, 기형립, 싸라기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현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⑦ 열손립 : 열에 의하여 변색 또는 손상된 낱알을 말한다. 다만, 현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⑧ 돌 : 돌, 콘크리트 조각 등 광물성의 고형물로서 1.7mm 금속망 체(KSA 5101-1 시험용체 규격)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크기의 것을 말한다.
- ⑨ 이종곡립 : 현미, 낱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 ⑩ 이물 : 곡립 외의 것과 1.7mm 금속망 체(KSA 5101-1 시험용체 규격)로 치면 체를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보리쌀

[규격번호 : 702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보리쌀(겉보리쌀, 찰보리쌀, 쌀보리쌀, 찹쌀보리쌀)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모양	강층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춘 것	강층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춘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냄새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③수분	14.0% 이하인 것	14.0% 이하인 것	14.0% 이하인 것
④메보리쌀 혼입	5.0% 이하인 것(찰보리쌀, 찹쌀보리쌀에 적용)	10.0% 이하인 것(찰보리쌀, 찹쌀보리쌀에 적용)	20.0% 이하인 것(찰보리쌀, 찹쌀보리쌀에 적용)
⑤열손립	0.0% 이하인 것	0.1% 이하인 것	0.2%이하인 것
⑥싸라기	-겉보리쌀, 찰보리쌀 : 4.0% 이하인 것 -쌀보리쌀, 찹쌀보리쌀 : 2.0% 이하인 것	-겉보리쌀, 찰보리쌀 : 8.0% 이하인 것 -쌀보리쌀, 찹쌀보리쌀 : 4.0% 이하인 것	-겉보리쌀, 찰보리쌀 : 15.0% 이하인 것 -쌀보리쌀, 찹쌀보리쌀 : 10.0% 이하인 것
⑦돌(1.5kg중)	없는 것	없는 것	없는 것
⑧이물	0.0% 이하인 것	0.2% 이하인 것	0.4%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메보리쌀 혼입 : 찰보리쌀 속에 포함된 메보리쌀을 말한다.
- ③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 ④ 열손립 : 열에 의하여 변색 또는 손상된 낱알을 말한다. 다만, 보리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⑤ 싸라기 : 1.7mm 금속망 체(KSA 5101-1 시험용체 규격)로 쳐서 체 위에 남는 것 중 부러졌거나 깨진 낱알을 말한다.
- ⑥ 돌 : 1.7mm 금속망 체(KSA 5101-1 시험용체 규격)로 쳐서 체 위에 남은 돌, 콘크리트 조각 등 광물성의 고형물질을 말한다.
- ⑦ 이물 : 보리쌀 외의 것과 1.7mm 금속망 체(KSA 5101-1 시험용체 규격)로 치면 체를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좁 쌀

[규격번호 : 703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차·메좁쌀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모양	강층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낱알이 충실한 것	강층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낱알이 충실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냄새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③수분	14.0% 이하인 것	14.0% 이하인 것	14.0% 이하인 것
④피해립	5.0% 이하인 것	10.0% 이하인 것	15.0% 이하인 것
⑤이물	0.0% 이하인 것	0.3%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⑥메좁쌀 혼입	5.0% 이하인 것(차좁쌀에 적용)	10.0% 이하인 것(차좁쌀에 적용)	15.0% 이하인 것(차좁쌀에 적용)
⑦이종곡립	0.0% 이하인 것	0.3%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⑧조	0.3%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⑨조건	생산연도가 다른 좁쌀이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수 없음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피해립 : 오염된 립, 병해립, 충해립, 변질립, 변색립, 파쇄립 등을 말한다.
- ③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 ④ 이물 : 850 μ m(0.85mm) 금속망 체(KS A 5101-1 시험용체 규격)로 쳐서 체 위에 남은 곡립 이외의 것과 체를 통과한 것을 말한다.
- ⑤ 메좁쌀 혼입 : 차좁쌀 속에 포함된 메좁쌀을 말한다.
- ⑥ 조 : 도정되지 않은 조곡 상태인 것을 말한다.
- ⑦ 이종곡립 : 좁쌀 외의 곡립을 말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율무쌀

[규격번호 : 704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율무쌀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 모양	강충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낱알이 충실한 것	강충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낱알이 충실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냄새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③ 수분	13.0% 이하인 것	13.0% 이하인 것	13.0% 이하인 것
④ 정립	75.0% 이상인 것	65.0% 이상인 것	55.0% 이상인 것
⑤ 열손립	0.0% 이하인 것	0.1% 이하인 것	0.2% 이하인 것
⑥ 피해립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⑦ 피율무(1.5kg중)	3립 이하인 것	5립 이하인 것	10립 이하인 것
⑧ 이종곡립	0.0% 이하인 것	0.3%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⑨ 돌	없는 것	없는 것	없는 것
⑩ 이물	0.3%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⑪ 조건	생산연도가 다른 율무쌀이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함수율을 말한다.
- ③ 정립 : 1.7mm 금속망 체(KSA 5101-1 시험용체 규격)로 쳐서 체 위에 남은 울무쌀로서 그 길이가 완전한 낱알의 3/4이상인 것
- ④ 열손립 : 열에 의하여 변색 또는 손상된 낱알을 말한다. 다만, 울무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⑤ 피해립 : 오염된 낱알, 병해립, 충해립, 반점립, 흑점립, 생리장해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울무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⑥ 피율무 : 울무의 껍질이 벗겨지지 아니한 것
- ⑦ 돌 : 1.7mm 금속망 체(KSA 5101-1 시험용체 규격)로 쳐서 체위에 남은 돌, 콘크리트 조각 등 광물성의 고형물질을 말한다.
- ⑧ 이물 : 1.7mm 금속망 체(KSA 5101-1 시험용체 규격)로 쳐서 체 위에 남은 돌, 콘크리트 조각 등 광물성의 고형물질을 말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콩

[규격번호 : 705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콩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으로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으로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수분	14.0% 이하인 것	14.0% 이하인 것	14.0% 이하인 것
③발아율	85% 이상인 것(콩나물콩에 적용)	85% 이상인 것(콩나물콩에 적용)	85% 이상인 것(콩나물콩에 적용)
④낱알의 굵기	콩의 굵기 구분에 따른 채워 남는 무게 비율이 80% 이상일 것 단, 콩나물 콩은 소립종인 경우 해당	콩의 굵기 구분에 따른 채워 남는 무게 비율이 80% 이상일 것	콩의 굵기 구분에 따른 채워 남는 무게 비율이 80% 이상일 것
⑤정립	95.0% 이상인 것	85.0%이상인 것	75.0%이상인것
⑥피해립	5.0% 이하인 것	15.0%이하인 것	25.0%이하인것
⑦이종곡립	0.0% 이하인 것	0.1% 이하인 것	0.3% 이하인것
⑧이종피색립	0.0% 이하인 것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것
⑨이물	0.0% 이하인 것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것
⑩조건	생산연도가 다른 콩이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수 없음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함수율을 말한다. 찹쌀의 수분 측정 방법을 따른다.
- ③ 정립 : 피해립, 미숙립, 이중곡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낱알을 말한다.
- ④ 피해립 : 손상된 낱알(병해립, 충해립, 부패립, 변질립, 변색립, 파쇄립, 껍질이 갈라지거나 벗겨진 립 등)을 말한다. 다만, 성숙 도중에 자연적으로 껍질의 일부가 갈라진 것, 자반병립 중 자주색 병반의 면적이 그 콩알 표면적의 20% 이하인 것 등 피해가 경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을 제외한다.
- ⑤ 이중곡립 : 콩 외의 곡립을 말한다.
- ⑥ 이중피색립 : 다른 색의 콩을 말한다.
- ⑦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 ⑧ 낱알의 굵기 : 콩의 굵기 구분에 따라 해당 체로 쳐서 체위에 남는 잔량에 대한 무게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 콩의 굵기 구분 >

구분	체 종류	구분방법
대립종	등근 눈의 금속판 체 (KSA 5101-2 시험용체 규격)	체눈의 직경이 7.10mm인 체위에 남는 것
중립종		체눈의 직경이 6.30mm인 체위에 남는 것
소립종		체눈의 직경이 4.00mm인 체위에 남는 것

농산물 표준규격

팔

[규격번호 : 706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팔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 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으로 난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으로 난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수분	14.0% 이하인 것	14.0% 이하인 것	14.0% 이하인 것
③ 정립	95.0% 이상인 것	85.0% 이상인 것	75.0% 이상인 것
④ 피해립	5.0% 이하인 것	15.0% 이하인 것	25.0% 이하인 것
⑤ 이종곡립	0.0% 이하인 것	0.1% 이하인 것	0.3% 이하인 것
⑥ 이종피색립	0.0% 이하인 것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⑦ 이물	0.0% 이하인 것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⑧ 조건	생산연도가 다른 팔이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함수율을 말한다.
- ③ 정립 : 피해립, 미숙립, 이종곡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난알을 말한다.
- ④ 피해립 : 손상된 난알(병해립, 충해립, 부패립, 변질립, 변색립, 파쇄립, 껍질이 갈라지거나 벗겨진 립 등)을 말한다. 다만, 성숙 도중에 자연적으로 껍질의 일부가 갈라진 것, 피해가 경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⑤ 이종곡립 : 팔 외의 곡립을 말한다.
- ⑥ 이종피색립 : 다른 색의 팔을 말한다.
- ⑦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녹 두

[규격번호 : 707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녹두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 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으로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으로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수분	14.0% 이하인 것	14.0% 이하인 것	14.0% 이하인 것
③ 정립	95.0% 이상인 것	85.0%이상인 것	75.0%이상인것
④ 발아율	85% 이상인 것(나물용에만 적용)	85% 이상인 것(나물용에만 적용)	85% 이상인 것(나물용에만 적용)
⑤ 피해립	5.0% 이하인 것	15.0%이하인 것	25.0%이하인것
⑥ 이종곡립	0.1% 이하인 것	0.3% 이하인 것	0.5% 이하인것
⑦ 이종피색립	0.0% 이하인 것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것
⑧ 이물	0.0% 이하인 것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것
⑨ 조건	생산연도가 다른 녹두가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 ③ 정립 : 피해립, 이종곡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낱알을 말한다.
- ④ 피해립 : 오염된 낱알, 병해립, 충해립, 변질립, 변색립, 파쇄립, 부패립 등과 미숙립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녹두의 품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⑤ 이종곡립 : 녹두 외의 곡립을 말한다.
- ⑥ 이종피색립 : 다른 색의 녹두를 말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찰수수쌀

[규격번호 : 708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찰수수쌀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 모양	강층의 제거 정도가 적당하고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강층의 제거 정도가 적당하고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냄새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③ 수분	15.0% 이하인 것	15.0%이하인 것	15.0% 이하인 것
④ 피해립	1.0% 이하인 것	2.0%이하인 것	3.0%이하인 것
⑤ 이종곡립	0.0% 이하인 것	0.2%이하인 것	0.4%이하인 것
⑥ 메수수쌀혼입	5.0% 이하인 것	10.0%이하인 것	15.0%이하인 것
⑦ 싸라기	5.0% 이하인 것	10.0%이하인 것	15.0%이하인 것
⑧ 이물	0.0% 이하인 것	0.3%이하인 것	0.5%이하인 것
⑨ 돌(1.0kg중)	없는 것	없는 것	없는 것
⑩ 조건	생산연도가 다른 찰수수쌀이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 ③ 피해립 : 오염된 낱알, 병해립, 충해립, 변질립, 변색립, 흑점립, 생리장해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수수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④ 이종곡립 : 수수쌀 외의 곡립을 말한다.
- ⑤ 메수수쌀 혼입 : 찰수수쌀 중 메수수쌀을 말한다.
- ⑥ 싸라기 : 1.4mm 금속망 체(KS A 5101-1 시험용 체)로 쳐서 체 위에 남은 것 중 부러졌거나 깨진 낱알을 말한다.
- ⑦ 이물 : 1.4mm 금속망 체(KS A 5101-1 시험용 체)로 쳐서 체 위에 남은 것 중 곡립외의 것과 체를 통과한 것을 말한다.
- ⑧ 돌 : 1.4mm 금속망 체(KS A 5101-1 시험용 체)로 쳐서 체 위에 남은 돌, 콘크리트조각 또는 광물성의 고형 물질을 말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찰기장쌀

[규격번호 : 709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찰기장쌀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 모양	강층의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낱알이 충실한 것	강층의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낱알이 충실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냄새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③ 수분	14.0% 이하인 것	14.0%이하인 것	14.0% 이하인 것
④ 피해립	3.0% 이하인 것	5.0%이하인 것	10.0%이하인 것
⑤ 이종곡립	0.0% 이하인 것	0.3%이하인 것	0.5%이하인 것
⑥ 메기장쌀 혼입	5.0% 이하인 것	10.0%이하인 것	15.0%이하인 것
⑦ 싸라기	5.0% 이하인 것	10.0%이하인 것	20.0%이하인 것
⑧ 기장	0.0% 이하인 것	0.5%이하인 것	1.0%이하인 것
⑨ 이물	0.0% 이하인 것	0.3%이하인 것	0.5%이하인 것
⑩ 조건	생산연도가 다른 찰기장쌀이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수분: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 ③ 피해립 : 오염된 낱알, 병해립, 충해립, 변질립, 변색립, 파쇄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기장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④ 이종곡립 : 기장쌀 외의 곡립을 말한다.
- ⑤ 메기장쌀 혼입 : 찰기장쌀 중 메기장쌀을 말한다.
- ⑥ 싸라기 : 850 μ m(0.85mm) 금속망 체(KS A 5101-1 시험용체 규격)로 쳐서 체 위에 남은 것 중 부러졌거나 깨진 낱알을 말한다.
- ⑦ 기장 : 도정되지 아니한 기장을 말한다.
- ⑧ 이물 : 850 μ m(0.85mm) 금속망 체(KS A 5101-1 시험용체 규격)로 쳐서 체 위에 남은 곡립외의 것과 체를 통과한 것을 말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메 밀

[규격번호 : 711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메밀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으로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으로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수분	14.0% 이하인 것	14.0%이하인 것	14.0% 이하인 것
③용적중(g/ℓ)	600이상인 것	560이상인 것	500이상인 것
④피해립	1.0% 이하인 것	2.0%이하인 것	3.0%이하인 것
⑤미숙립	10.0%이하인 것	20.0%이하인 것	25.0%이하인 것
⑥이종곡립	0.1% 이하인 것	0.3%이하인 것	0.5%이하인 것
⑦이물	0.5% 이하인 것	1.0%이하인 것	2.0%이하인 것
⑧조건	생산연도가 다른 메밀이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수분: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함수율을 말한다.
- ③ 용적중 : 「별표6」 「항목별 품위계측 및 감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1ℓ의 무게를 말한다.
- ④ 피해립 : 손상된 낱알(병해립, 충해립, 변색립, 변질립, 파쇄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메밀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⑤ 미숙립 : 성숙되지 않은 낱알을 말한다.
- ⑥ 이종곡립 : 메밀 외의 곡립을 말한다.
- ⑦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옥수수(팝콘용)

[규격번호 : 712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팝콘용 옥수수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 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으로 낱알이 충실하고 껍기가 고른 것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으로 낱알이 충실하고 껍기가 고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수분	14.0% 이하인 것	14.0%이하인 것	14.0% 이하인 것
③ 정립	95.0%이상인 것	90.0%이상인 것	80.0%이하인 것
④ 피해립	2.0% 이하인 것	4.0%이하인 것	10.0%이하인 것
⑤ 미숙립	2.0%이하인 것	4.0%이하인 것	6.0%이하인 것
⑥ 이종곡립	0.5% 이하인 것	1.0%이하인 것	2.0%이하인 것
⑦ 이물	0.0% 이하인 것	0.1%이하인 것	0.3%이하인 것
⑧ 돌(500g중)	없는 것	없는 것	없는 것
⑨ 조건	생산연도가 다른 팝콘용 옥수수가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수분: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 ③ 정립 : 피해립, 미숙립, 이종곡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낱알을 말한다.
- ④ 피해립 : 손상된 낱알(병해립, 충해립, 부패립, 변색립, 변질립, 파쇄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⑤ 미숙립 : 성숙되지 않은 낱알을 말한다.
- ⑥ 이종곡립 : 옥수수 외의 곡립을 말한다.
- ⑦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 ⑧ 고형물 : 돌, 콘크리트조각 등 광물성 고형물을 말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옥수수쌀

[규격번호 : 7122]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메·찰옥수수쌀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 모양	강층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낱알이 충실한 것	강층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낱알이 충실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냄새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③ 수분	15.0% 이하인 것	15.0%이하인 것	15.0% 이하인 것
④ 정립	90.0%이상인 것	85.0%이상인 것	80.0%이상인 것
⑤ 피해립	0.1%이하인 것	0.5%이하인 것	1.0%이하인 것
⑥ 파쇄립	10.0%이하인 것	15.0%이하인 것	20.0%이하인 것
⑦ 메옥수수쌀 혼입	10.0%이하인 것(찰옥수수쌀에만 적용)	20.0%이하인 것(찰옥수수쌀에만 적용)	25.0%이하인 것 (찰옥수수쌀에만 적용)
⑧ 이종곡립	0.0% 이하인 것	0.3%이하인 것	0.5%이하인 것
⑨ 이물	0.1% 이하인 것	0.3%이하인 것	0.5%이하인 것
⑩ 돌(500g 중)	없는 것	없는 것	없는 것
⑪ 조건	생산연도가 다른 옥수수쌀이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옥수수쌀 : 옥수수를 도정한 것으로 파쇄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③ 수분: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 ④ 정립 : 4.0mm 둥근 눈의 금속판 체(KS A 5101-2 시험용체 규격)로 쳐서 체위에 남은 옥수수쌀로서 그 크기가 완전한 낱알의 3/4 이상인 건전한 낱알을 말한다.
- ⑤ 피해립 : 손상된 낱알(병해립, 충해립, 부패립, 변색립, 변질립, 파쇄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⑥ 파쇄립 : 4.0mm 둥근 눈의 금속판 체(KS A 5101-2 시험용체 규격)로 쳐서 체위에 남은 옥수수쌀로서 부러졌거나 깨진 낱알을 말한다.
- ⑦ 메옥수수쌀 혼입 : 찰옥수수쌀에 포함된 메옥수수쌀을 말한다.
- ⑧ 이종곡립 : 옥수수쌀 외의 곡립을 말한다.
- ⑨ 이물 : 4.0mm 둥근 눈의 금속판 체(KS A 5101-2 시험용체 규격)로 쳐서 체를 통과한 것과 기타 곡립 이외의 것을 말한다.
- ⑩ 고형물 : 돌, 콘크리트조각 등 광물성 고형물을 말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국 화

[규격번호 : 801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국화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크기의 고르기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② 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줄기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굵기가 일정한 것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굵기가 일정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개화정도	- 스탠다드 : 꽃봉오리가 1/2정도 개화된 것 - 스프레이 : 꽃봉오리가 3~4개 정도 개화되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 것	- 스탠다드 : 꽃봉오리가 2/3정도 개화된 것 - 스프레이 : 꽃봉오리가 5~6개 정도 개화되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손질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⑥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
⑦ 경결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호 칭 구 분		1급	2급	3급	1묶음의 본수(본)
1묶음 평균의 꽃대길이(cm)	스탠다드	80이상	70이상~80미만	30이상~70미만	20
	스프레이	70이상	60이상~70미만	30이상~60미만	5 또는 10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화 : 품종이 다른 것
 - ㉡ 상처 : 자상, 압상 동상, 열상 등이 있는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생리장해 : 기형화, 노심현상, 버들눈, 관생화 등이 있는 것
 - ㉤ 형상불량, 파손, 굽힘, 개화 차이가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현저하게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경미한 약해, 생리장해, 상처, 농약살포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손질 정도가 미비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카네이션

[규격번호 : 802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카네이션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크기의 고르기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② 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줄기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굵기가 일정한 것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굵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개화정도	- 스탠다드 : 꽃봉오리가 1/4정도 개화된 것 - 스프레이 : 꽃봉오리가 1~2개 정도 개화되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 것	- 스탠다드 : 꽃봉오리가 1/2정도 개화된 것 - 스프레이 : 꽃봉오리가 3~4개 정도 개화되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손질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⑥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
⑦ 경결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 호 칭		1급	2급	3급	1묶음의 본수 (본)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스탠다드	70이상	60이상~70미만	30이상~60미만	20
	스프레이	60이상	50이상~60미만	30이상~50미만	10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화 : 품종이 다른 것
 - ㉡ 상처 : 자상, 압상, 동상, 열상 등이 있는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생리장해 : 악할, 관생화, 수곡, 변색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형상불량, 파손, 굽힘, 개화 차이가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현저하게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경미한 약해, 생리장해, 상처, 농약살포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손질 정도가 미비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장 미

[규격번호 : 803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장미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크기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② 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줄기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꺾기가 일정한 것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꺾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개화정도	- 스탠다드 : 꽃봉오리가 1/5정도 개화된 것 - 스프레이 : 꽃봉오리가 1~2개 정도 개화된 것	- 스탠다드 : 꽃봉오리가 2/5정도 개화된 것 - 스프레이 : 꽃봉오리가 3~4개 정도 개화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손질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⑥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
⑦ 경결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호칭	1급	2급	3급	1묶음의 본수(본)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스탠다드		80이상	70이상~80미만	20이상~70미만	10
	스프레이		70이상	60이상~70미만	30이상~60미만	5 또는 10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화 : 품종이 다른 것
 - ㉡ 상처 : 자상, 압상, 동상, 열상 등이 있는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생리장해 : 꽃목굵음, 기형화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형상불량, 파손, 굽힘, 개화 차이가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현저하게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경미한 약해, 생리장해, 상처, 농약살포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손질 정도가 미비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백 합

[규격번호 : 804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백합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 크기의 고르기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② 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나며 크기가 균일 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줄기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굽기가 일정한 것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굽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개화정도	꽃봉오리 상태에서 화색이 보이고 균일한 것	꽃봉오리가 1/3정도 개화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손질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하며 크기가 균일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⑥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
⑦ 경결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 호 칭	1급	2급	3급	1묶음의 본수 (본)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70이상	60이상~70미만	30이상~60미만	5 또는 10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화 : 품종이 다른 것
 - ㉡ 상처 : 자상, 압상, 동상, 열상 등이 있는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생리장해 : 블라스팅, 엽소, 블라인드, 기형화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형상불량, 파손, 굽힘, 개화 차이가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현저하게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경미한 약해, 생리장해, 상처, 농약살포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손질 정도가 미비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글라디올러스

[규격번호 : 805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글라디올러스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 크기의 고르기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② 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줄기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굽기가 일정한 것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굽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개화정도	꽃봉오리 2~3개의 화색이 보이는 것	꽃봉오리 3~4개의 화색이 보이는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손질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⑥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
⑦ 경결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 호 칭	1급	2급	3급	1묶음의 본수 (본)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90이상	75이상~90미만	60이상~75미만	10
꽃의 수	14이상	11이상~14미만	11미만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화 : 품종이 다른 것
 - ㉡ 상처 : 자상, 압상, 동상, 열상 등이 있는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생리장해 : 수곡 현상, 잎끝마름 현상, 일소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화수의 끝 부분이 심하게 휘어진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현저하게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경미한 약해, 생리장해, 상처, 농약살포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손질 정도가 미비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튤립

[규격번호 : 806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튤립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 크기의 고르기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② 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줄기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굽기가 일정한 것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굽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개화정도	꽃봉오리 상태에서 화색이 보이는 것	꽃봉오리가 1/3 정도 개화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손질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⑥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
⑦ 경결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 호 칭	1급	2급	3급	1묶음의 본수 (본)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50이상	40이상~50미만	20이상~40미만	10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 : 약해, 일소, 상처, 형상불량 등이 품질에 심한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 : 피해 정도가 품질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농산물 표준규격

거베라

[규격번호 : 807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거베라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 크기의 고르기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② 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줄기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꺾기가 일정한 것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꺾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개화정도	4/5 정도 개화된 것	완전히 개화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손질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⑥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
⑦ 경결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⑧ 조건	꽃봉오리에 캡을 씌우고 줄기 18cm까지 테이핑한 것	꽃봉오리에 캡을 씌우고 줄기 18cm까지 테이핑한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 호 칭	1급	2급	3급	1묶음의 본수 (본)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70이상	60이상~70미만	40이상~60미만	10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화 : 품종이 다른 것
 - ㉡ 상처 : 꽃잎에 자상, 압상, 동상, 열상 등이 심한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생리장해 : 관생화, 경할현상, 일소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통상화의 모양이 찌그러진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현저하게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경미한 약해, 생리장해, 상처, 농약살포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손질 정도가 미비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아이리스

[규격번호 : 808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아이리스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 크기의 고르기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② 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줄기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굵기가 일정한 것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굵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개화정도	꽃봉오리가 1/3 정도 올라온 것	꽃봉오리가 1/2 정도 올라온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손질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⑥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
⑦ 경결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 호 칭	1급	2급	3급	1묶음의 본수 (본)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60이상	50이상~60미만	30이상~50미만	10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 : 약해, 일소, 상처, 형상불량 등이 품질에 심한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 : 피해 정도가 품질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농산물 표준규격
프리지아

[규격번호 : 809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프리지아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크기의 고 르기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 는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② 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줄기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굽기가 일정한 것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굽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개화정도	꽃봉오리 아래 부분의 소화가 화색이 보이는 것	꽃봉오리 아래 부분의 소화가 1~2개 개화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손질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⑥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
⑦ 경결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호 칭	1급	2급	3급	1묶음의 본수 (본)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50이상	40이상~50미만	20이상~40미만	10 또는 20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화 : 품종이 다른 것
 - ㉡ 상처 : 꽃봉오리 혹은 꽃잎에 탈리, 열상, 자상, 압상 등이 심한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생리장해 : 꽃땀현상, 경할현상, 일소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꽃대가 절화 길이의 10% 이상 휘어있는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현저하게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경미한 약해, 생리장해, 상처, 농약살포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손질 정도가 미비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금어초

[규격번호 : 811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금어초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① 크기의 고르기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② 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줄기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굵기가 일정한 것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굵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개화정도	전체 소화중 1/3 정도 개화한 것	전체 소화중 1/2 정도 개화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손질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⑥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
⑦ 경결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 호 칭	1급	2급	3급	1묶음의 본수 (본)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80이상	70이상~80미만	40이상~70미만	10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화 : 품종이 다른 것
 - ㉡ 상처 : 꽃봉오리 혹은 꽃잎에 탈리, 열상, 자상, 압상 등이 심한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생리장해 : 수곡현상, 꽃땀현상, 일소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화수의 끝 부분이 심하게 휘어진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현저하게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경미한 약해, 생리장해, 상처, 농약살포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손질 정도가 미비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스타티스

[규격번호 : 812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스타티스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크기의 고르기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② 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줄기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굽기가 일정한 것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굽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개화정도	전체 소화중 2/3 정도 개화된 것	전체 소화중 2/3 정도 개화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손질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⑥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
⑦ 경결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호칭	1급	2급	3급	1묶음의본수 (본)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70이상	60이상~70미만	30이상~60미만	10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화 : 품종이 다른 것
 - ㉡ 상처 : 꽃봉오리 혹은 꽃잎에 탈리, 열상, 자상, 압상등이 심한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생리장해 : 피해가 심한 것
 - ㉤ 형상불량, 파손, 굽힘, 개화 차이가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현저하게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경미한 약해, 생리장해, 상처, 농약살포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손질 정도가 미비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칼 라

[규격번호 : 814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칼라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크기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② 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줄기	세력이 강하고, 휘어짐이 없으며 굵기가 일정한 것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굵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개화정도	- 백색 : 꽃봉오리가 1/3 정도 개화된 것 - 유색 : 꽃봉오리가 2/3 정도 개화된 것	- 백색 : 꽃봉오리가 2/3 정도 개화된 것 - 유색 : 꽃봉오리가 완전히 개화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손질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⑥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
⑦ 경결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호 칭	1급	2급	3급	1묶음의 본수 (본)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80이상	70이상~80미만	40이상~70미만	5(유색), 10(백색)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화 : 품종이 다른 것
 - ㉡ 상처 : 화포에 탈리, 열상, 자상, 압상 등이 심한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생리장해 : 겹피기현상, 녹화현상, 악할현상, 일소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줄기를 세웠을 때 90°이상 휘는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현저하게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경미한 약해, 생리장해, 상처, 농약살포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손질 정도가 미비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리시안사스

[규격번호 : 815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리시안사스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크기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② 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줄기	세력이 강하고, 휘어짐이 없으며 굵기가 일정한 것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굵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개화정도	각 측지의 1번화가 1/2 정도 개화된 것	각 측지의 1번화가 완전히 개화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손질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⑥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
⑦ 경결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호 칭	1급	2급	3급	1묶음의 본수 (본)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70이상	60이상~70미만	30이상~60미만	10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화 : 품종이 다른 것
 - ㉡ 상처 : 꽃에 탈리, 열상, 자상, 압상 등이 심한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생리장해 : 피해가 심한 것
 - ㉤ 형상불량, 파손, 굽힘, 개화 차이가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현저하게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경미한 약해, 생리장해, 상처, 농약살포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손질 정도가 미비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안 개 꽃

[규격번호 : 816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안개꽃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크기의 고르기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② 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줄기	세력이 강하고, 휘어짐이 없으며 굵기가 일정한 것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굵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개화정도	전체의 소화 중 2/3 정도 개화된 것	전체의 소화 중 2/3 정도 개화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손질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⑥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
⑦ 경결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호 칭	1급	2급	3급	1묶음의본수 (본)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60이상	50이상~60미만	30이상~50미만	20~50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 : 약해, 일소, 상처, 형상불량 등이 품질에 심한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 : 피해 정도가 품질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농산물 표준규격
스토크

[규격번호 : 819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스톡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크기의 고르기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② 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줄기	세력이 강하고, 휘어짐이 없으며 굵기가 일정한 것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굵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개화정도	전체의 소화 중 1/3 정도 개화된 것	전체의 소화 중 2/3 정도 개화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손질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⑥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
⑦ 경결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호 칭	1급	2급	3급	1묶음의 본수 (본)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70이상	60이상~70미만	30이상~60미만	5 또는 10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화 : 품종이 다른 것
 - ㉡ 상처 : 꽃봉오리 혹은 꽃잎, 잎에 탈리, 열상, 자상, 압상 등이 심한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생리장해 : 양분결핍증, 경화현상, 일소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줄기가 심하게 휘어진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현저하게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경미한 약해, 생리장해, 상처, 농약살포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손질 정도가 미비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 표준규격
공작초

[규격번호 : 822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공작초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크기의 고르기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② 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줄기	세력이 강하고, 휘어짐이 적으며 굵기가 일정한 것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굵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개화정도	전체의 꽃봉오리 중 1/3 정도 개화된 것	전체의 꽃봉오리 중 2/3 정도 개화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손질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⑥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
⑦ 경결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호 칭	1급	2급	3급	1묶음의 본수 (본)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80이상	70이상~80미만	30이상~70미만	10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 : 약해, 일소, 상처, 형상불량 등이 품질에 심한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 : 피해 정도가 품질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농산물 표준규격
알스트로메리아

[규격번호 : 823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알스트로메리아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크기의 고르기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② 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줄기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굵기가 일정한 것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굵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개화정도	- 하계(5월~10월) : 꽃봉오리중 가장 빠른 것의 개화가 1/3 정도인 것 - 동계(11월~익년 4월) : 꽃봉오리중 가장 빠른 것의 개화가 2/3 정도인 것	- 하계(5월~10월) : 꽃봉오리중 가장 빠른 것의 개화가 1/3 정도인 것 - 동계(11~4월) : 꽃봉오리중 가장 빠른 것의 개화가 2/3 정도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손질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⑥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
⑦ 경결점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 호 칭	1급	2급	3급	1묶음의 본수 (본)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80이상	70이상~80미만	50이상~70미만	5 또는 10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 : 약해, 일소, 상처, 형상불량 등이 품질에 심한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 : 피해 정도가 품질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농산물 표준규격
포인세티아

[규격번호 : 825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포인세티아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기본품질	잎이 풍성하며 화분의 흙이 보이지 않고, 병충해 및 상처가 없고 신선한 것	잎이 풍성하지 않고 화분의 흙이 약간 보이며 병충해 흔적등 상처가 경미하게 있는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잎	잎의 색상이 선명한 것	잎의 색상의 선명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개화정도	꽃가루가 터지지 않은 상태의 것	꽃가루가 조금 터진 상태의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착색정도	포엽과 착색엽이 완전히 착색된 것	포엽과 착색엽이 완전히 착색되지 않는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볼륨감	잎의 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30장 내외인 것	잎의 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25장 내외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⑥ 균형미 (초폭/초장)	1.6±0.2, 치우침 없음	1.6±0.2초과, 치우침 없음	특·상에 미달하는 것

< 용어의 정의 >

- ① 포엽 : 하나의 꽃 또는 꽃차례를 안고 있는 소형의 잎
- ② 착색엽 : 잎과 포엽 사이에 줄기가 형성되는 것으로 일부만 착색이 되는 경우도 있다.
- ③ 초장 : 지제부로부터 식물체 선단부의까지의 높이
- ④ 초폭 : 식물의 가로폭으로 넓은 쪽을 측정한 것
- ⑤ 균형미 : 분과 조화롭고, 균형잡힌 구조/꽃의 높이 차이

< 최소기준 >

- ① 잎이나 꽃, 화분에 흙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② 꽃대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 ③ 충해에 의한 꽃대 손상이 없어야 한다.
- ④ 운반상자 및 포장재는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⑤ 수송기간 중 물리적 상처 및 수분손실이 없어야 한다.
- ⑥ 시든 꽃이 없고 꽃가루 등이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칼랑코에

[규격번호 : 826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칼랑코에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기본품질	잎이 풍성하며 화분의 흙이 보이지 않고, 병충해 및 상처가 없는 것	잎이 풍성하지 않고 화분의 흙이 약간 보이며 병충해 흔적등 상처가 경미하게 있는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꽃	품종 고유의 색상으로 화색이 선명한 것	품종 고유의 색상으로 화색이 조금 떨어지는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잎	잎의 색상, 무늬가 선명하고 윤기가 있는 것	잎의 색상, 무늬 선명도 및 윤기가 조금 떨어지는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개화정도	꽃대가 균일하게 올라오고 30~50% 개화된 것	꽃대가 균일하게 올라오는 정도는 약간 다르며 50~80% 개화 된 것, 또는 30% 미만으로 개화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분지수/ 꽃대수	7개/15대 이상	5~7개/10~15대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⑥ 균형미 (초폭/초장)	1.5±0.2, 치우침 없음	1.5±0.2초과, 치우침 없음	특·상에 미달하는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분지수 : 한 줄기에서 분지되어 개화 가능한 가지
- ② 꽃대수 : 분지된 가지에서 나온 전체 꽃대의 수
- ③ 초장 : 지제부로부터 식물체 선단부까지의 높이
- ④ 초폭 : 식물의 가로폭으로 넓은 쪽을 측정 한 것
- ⑤ 균형미 : 분과 조화롭고, 균형잡힌 구조/꽃의 높이 차이

< 최소기준 >

- ① 잎이나 꽃, 화분에 흙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② 꽃대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 ③ 충해에 의한 꽃대 손상이 없어야 한다.
- ④ 운반상자 및 포장재는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⑤ 수송기간 중 물리적 상처 및 수분손실이 없어야 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시클라멘

[규격번호 : 827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시클라멘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기본품질	잎이 풍성하며 화분의 흙이 보이지 않고, 병충해 및 상처가 없는 것	잎이 풍성하지 않고 화분의 흙이 약간 보이며 병충해 흔적 등 상처가 경미하게 있는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꽃	품종 고유의 색상으로 화색이 선명한 것	품종 고유의 색상으로 화색이 조금 떨어지는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잎	잎의 색상, 무늬가 선명하고 윤기가 있는 것	잎의 색상, 무늬가 선명도 및 윤기가 조금 떨어지는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개화정도	꽃대가 균일하게 올라오고 8개 이상 개화된 것 (전체 10~13개)	꽃대가 균일하게 올라오는 정도는 약간 다르며 4~6개 개화 된 것(전체 6~8개)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기형화	전체꽃의 15% 이하	전체꽃의 15~30% 이하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⑥ 균형미 (초폭/초장)	1.6±0.2, 치우침 없음	1.6±0.2초과, 치우침 없음	특·상에 미달하는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대륜 : 꽃잎의 길이가 4.5cm 이상인 것
- ② 소륜 : 꽃잎의 길이가 4.5cm 이하인 것
- ③ 기형화 : 꽃잎이 수평으로 피어 있는 비율이 25%이상인 것
- ④ 초장 : 지제부로부터 식물체 선단부 까지의 높이
- ⑤ 초폭 : 식물의 가로폭으로 넓은 쪽을 측정한 것

< 최소기준 >

- ① 잎이나 꽃, 화분에 흙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② 꽃대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 ③ 충해에 의한 꽃대 손상이 없어야 한다.
- ④ 운반상자 및 포장재는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⑤ 수송기간 중 물리적 상처 및 수분손실이 없어야 한다.